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07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 민형배・이개호・정동영

소병훈 • 박지원 • 양부남

김문수 · 김현정 · 이성윤

강유정 · 조승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지향하는 노인들의 교육 욕구에 걸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

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노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19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제20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제21조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 ③ (생 략)	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
	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노
	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
	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u>.</u>
<u>④·⑤</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u>7.</u> (생 략)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	4
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 13. (생 략)
- ⑤ ~ ⑧ (생 략)
-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생 략)
 -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3의2. (생략)
 - <신 설>
 - 4. ~ 9. (생략)
 - ③ ④ (생 략)
- 의 설치 · 운영 등) ① · ② (생 략)
 -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1의2. (생략)
 - <신 설>
 - 2. ~ 6. (생략)
 - ④ (생략)

3의2.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 그램 개발의 지원

- 4. ~ 13. (현행과 같음)
- ⑤ ~ ⑧ (현행과 같음)
-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 그램 운영
 - 4. ~ 9.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 의 설치 · 운영 등) ① · ② (현 행과 같음)

 - 1. 1의2. (현행과 같음)
 - 1의3.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 그램의 개발 • 운영
 - 2. ~ 6.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